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33번지 일원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1,130세대 중 881세대 (전용면적 59㎡ 377세대, 84㎡ 504세대)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집단대출이 현재 미정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알 려 드 립 니 다

■ 종전 통장(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17.)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이 각 공급유형별 입주자저축 요건 및 배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17.) 이후 종전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순위확인)이 불가하며 추첨대상에서 제외]** 이 때,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저축 기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부터 납입실적을 인정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0.17.(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5000513이며,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상담을 위해 분양사무실을 운영하오니, 모집공고문 및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은 분양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분양사무실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 5번 출구에서 500m 앞)
※ 분양사무실에는 실물 견본주택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견본주택(www.lh-dd.co.kr)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분양사무실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 대전충남지역본부 1층
- 분양사무실 전화번호 : 042-477-7555
- 분양사무실 운영시간 : 평일 09:30~17: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10/18(토), 10/19(일), 10/25(토), 10/26(일)은 주말에도 운영합니다.
- 방문인원이 많은 경우 공식홈페이지(www.lh-dd.co.kr)에서 사전 방문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 전 반드시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팸플릿의 타입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시고,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것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KB부동산 웹/앱을 통해서도 청약신청 및 신청내역 결과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접속경로 : KB부동산 웹/앱 접속 → 메뉴 → 공공주택 → LH청약전용관)

■ 본 단지에 'ANDANTE 단독', 'ANDANTE+단지별 브랜드'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단지별 브랜드'를 단독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별 브랜드'로 **주관 건설사(금호건설 ARTERA)**의 아파트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단지 특성 및 입주예정자의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상표권 출원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 대전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구주민으로서 **본 단지를 우선공급 받으신 지구주민 및 세대구성원**(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동 지구주민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 후 당첨되더라도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기관추천 확정대상자는 불가),**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25조에 의거 **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2024.10.17.이전) 거주하는 신청자**가 대전광역시에 1년 미만 거주자 및 그 외 지역(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대전광역시에 1년 미만 거주자 및 그 외 지역(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1) **'24.10.17**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2) **'24.10.17**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3)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4) (1) 또는 (2)에 해당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5)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6)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신청자격 **검증대상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1순위자)	추첨공급
무주택여부, 중복청약, 재당첨여부, 부적격당첨제한 등	세대구성원								
세대주여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신청자 본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과거 주택소유이력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세대구성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입주자저축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 불필요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이상)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이상)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이상) ※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이상)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이상)	**[1순위자]** 신청자 본인 (6개월,6회이상) / **[2순위자]** 신청자 본인(가입자)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이상)	**[1순위자]**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이상) / **[2순위자]** 신청자 본인(가입자)
소득	해당 없음	(세대)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4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200%) *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자산(부동산, 자동차)	해당 없음	(세대)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45,630천원 이하					(세대)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45,630천원 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검증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혼인신고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맞벌이'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신청이 가능 (전환 해지를 이미 신청한 종전 저축으로는 청약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본 공고문에서 같음)**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입니다.

구분	해당 여부	관련 법령
재당첨제한	해당 없음	「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전매제한	해당 없음	「주택법」제64조,「주택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별표3
거주의무	해당 없음	「주택법」제57조의2,「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

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혼인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생아·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각 호(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2025년)**

공 고	접 수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선택품목 결정	계 약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1순위자), 추첨공급)		온라인	현장		전자	현장
10.17(금)	10.27(월) (10:00~17:00)	10.28(화)~10.29(수) (10:00~17:00)	11.07(금) (16:00)	11.10(월) ~11.11(화) (10:00~17:00)	11.12(수) ~11.14(금) (10:00~17:00)	12.22(월) ~12.23(화) (10:00~17:00)	12.26(금).12.29(월) (10:00~17:00)	12.30(화) ~12.31(수) (10:00~17:00)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분양사무실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분양사무실

※ (현장)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대전대동2 1블록 분양사무실 (대전 서구 둔산중로 108, LH 1층)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 없이 **전자계약기간(2025.12.26.(금), 12.29(월) 10:00~17:00) 내 계약금 입금 후 공동인증서(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는 분은 현장 계약 체결기간에 대전대동2 1블록 분양사무실(대전 서구 둔산중로 108, LH 1층)에 'Ⅶ.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 입금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며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LH는 인지세 분담액(1/2)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초과~ 3천만원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이 공고문에 기재된 나이는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민법」제158조에 따른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되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발표일 현재 재당첨제한기간 내에 있는 당첨자 및 그 세대(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재당첨 제한 사례 참고]

※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청약과열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됩니다.

※ 아래 예시는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이전에 당첨된 사례로서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합니다.

○ 2015년 6월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0년 6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4년 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공급한 85초과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년간(2015년 9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7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1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아님)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재당첨 제한 기간 없음
○ 2017년 7월 부산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3년간(2020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해당

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혼인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생아·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 함에 유의)

■ **공급유형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공급유형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Ⅰ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대전대동2 1블록 : 공공분양주택 10층(최저)~35층(최고) 13개동 전용면적 85㎡이하 1,130세대 중 지구주민 기공급분(249세대)를 제외한 881세대
(특별공급 659세대, 일반공급 222세대)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주택타입	세대당 주택면적(㎡)					발코니		공유대지면적(㎡)	공급세대수									최고층수	1층 세대수	입주예정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면적(계)	확장여부	면적(㎡)		계	지구주민(기공급)	특별공급							일반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국가유공자	기타특별				
1	합 계										1,130	249	88	88	132	44	176	44	87	222		45	
	059.8900A	59A	59.89	20.3283	4.6752	32.1379	117.0314	확장	22.35	28.0504	110	61	5	5	7	2	10	2	5	13	17	5	'29.02 (예정)
	059.9100B	59B	59.91	20.3351	4.6767	32.1486	117.0704	확장	19.37	28.0597	272	26	24	25	37	12	49	12	24	63	22	11	
	059.6800C	59C	59.68	20.2570	4.6588	32.0252	116.6210	확장	24.79	27.9520	39	7	2	3	4	2	7	2	4	8	18	1	
	059.8000D	59D	59.80	20.2977	4.6681	32.0896	116.8554	확장	21.60	28.0082	50	-	4	5	8	3	10	3	5	12	18	2	
	084.6600A	84A	84.66	28.7359	6.6087	45.4299	165.4345	확장	21.16	39.6517	310	83	25	22	34	11	45	11	22	57	35	10	
	084.9700B	84B	84.97	28.8411	6.6329	45.5963	166.0403	확장	18.87	39.7969	152	66	10	9	13	4	17	4	8	21	35	5	
	084.9300C	84C	84.93	28.8275	6.6298	45.5748	165.9621	확장	34.14	39.7782	141	4	13	14	21	7	27	7	14	34	33	3	
	084.8600D	84D (복층)	84.86	28.8038	6.6243	45.5372	165.8253	확장	25.70	39.7454	56	2	5	5	8	3	11	3	5	14	13	8	

※ [중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면적 등 실거주면적은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이버견본주택, 팸플랫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접수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84D는 복층 구조로 단위세대별 평면도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059.9100B형은 현관 팬트리 위치 차이로 인해(면적 동일) 팸플릿 및 사이버 견본주택상 59B타입, 59B-1타입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타입 구분 없이 059.9100B형으로 통합하여 공급합니다.**

※ **101동~107동 4호라인, 108동~110동 1호라인, 111동 4호라인, 112동~113동 1호라인은 침실2,3이 북동향입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29년 02월입니다.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및 납부 일정

■ 분양가격 납부조건 등 안내

[단위 : 원]

주택형	주택타입	층별	구분	주택가격	계약금(10%)	1차 중도금(15%)	2차 중도금(15%)	잔금	융자금(주택도시기금)
					계약시	('26.12.16.)	('27.12.16.)	입주시	
059.8900A	59A	1층	기본형	343,800,000	34,380,000	51,570,000	51,570,000	151,280,000	55,000,000
			마이너스옵션	313,650,000	31,365,000	47,047,000	47,047,000	133,191,000	55,000,000
		2층	기본형	351,200,000	35,120,000	52,680,000	52,680,000	155,720,000	55,000,000
			마이너스옵션	321,050,000	32,105,000	48,157,000	48,157,000	137,631,000	55,000,000
		3층	기본형	358,700,000	35,870,000	53,805,000	53,805,000	160,220,000	55,000,000
			마이너스옵션	328,550,000	32,855,000	49,282,000	49,282,000	142,131,000	55,000,000
		4층	기본형	366,200,000	36,620,000	54,930,000	54,930,000	164,720,000	55,000,000
			마이너스옵션	336,050,000	33,605,000	50,407,000	50,407,000	146,631,000	55,000,000
		5층~15층	기본형	373,700,000	37,370,000	56,055,000	56,055,000	169,220,000	55,000,000
			마이너스옵션	343,550,000	34,355,000	51,532,000	51,532,000	151,131,000	55,000,000
		16층~17층	기본형	375,500,000	37,550,000	56,325,000	56,325,000	170,300,000	55,000,000
			마이너스옵션	345,350,000	34,535,000	51,802,000	51,802,000	152,211,000	55,000,000
059.9100B	59B	1층	기본형	343,800,000	34,380,000	51,570,000	51,570,000	151,280,000	55,000,000
			마이너스옵션	314,370,000	31,437,000	47,155,000	47,155,000	133,623,000	55,000,000
		2층	기본형	351,300,000	35,130,000	52,695,000	52,695,000	155,780,000	55,000,000
			마이너스옵션	321,870,000	32,187,000	48,280,000	48,280,000	138,123,000	55,000,000
		3층	기본형	358,800,000	35,880,000	53,820,000	53,820,000	160,280,000	55,000,000
			마이너스옵션	329,370,000	32,937,000	49,405,000	49,405,000	142,623,000	55,000,000
		4층	기본형	366,300,000	36,630,000	54,945,000	54,945,000	164,780,000	55,000,000
			마이너스옵션	336,870,000	33,687,000	50,530,000	50,530,000	147,123,000	55,000,000
		5층~15층	기본형	373,800,000	37,380,000	56,070,000	56,070,000	169,280,000	55,000,000
			마이너스옵션	344,370,000	34,437,000	51,655,000	51,655,000	151,623,000	55,000,000
		16층~22층	기본형	375,600,000	37,560,000	56,340,000	56,340,000	170,360,000	55,000,000
			마이너스옵션	346,170,000	34,617,000	51,925,000	51,925,000	152,703,000	55,000,000
059.6800C	59C	1층	기본형	342,500,000	34,250,000	51,375,000	51,375,000	150,500,000	55,000,000
			마이너스옵션	312,840,000	31,284,000	46,926,000	46,926,000	132,704,000	55,000,000
		2층	기본형	349,900,000	34,990,000	52,485,000	52,485,000	154,940,000	55,000,000
			마이너스옵션	320,240,000	32,024,000	48,036,000	48,036,000	137,144,000	55,000,000
		3층	기본형	357,400,000	35,740,000	53,610,000	53,610,000	159,440,000	55,000,000
			마이너스옵션	327,740,000	32,774,000	49,161,000	49,161,000	141,644,000	55,000,000
		4층	기본형	364,800,000	36,480,000	54,720,000	54,720,000	163,880,000	55,000,000
			마이너스옵션	335,140,000	33,514,000	50,271,000	50,271,000	146,084,000	55,000,000
		5층~15층	기본형	372,300,000	37,230,000	55,845,000	55,845,000	168,380,000	55,000,000
			마이너스옵션	342,640,000	34,264,000	51,396,000	51,396,000	150,584,000	55,000,000
		16층~18층	기본형	374,100,000	37,410,000	56,115,000	56,115,000	169,460,000	55,000,000
			마이너스옵션	344,440,000	34,444,000	51,666,000	51,666,000	151,664,000	55,000,000
059.8000D	59D	1층	기본형	343,200,000	34,320,000	51,480,000	51,480,000	150,920,000	55,000,000
			마이너스옵션	313,830,000	31,383,000	47,074,000	47,074,000	133,299,000	55,000,000
		2층	기본형	350,700,000	35,070,000	52,605,000	52,605,000	155,420,000	55,000,000
			마이너스옵션	321,330,000	32,133,000	48,199,000	48,199,000	137,799,000	55,000,000
		3층	기본형	358,100,000	35,810,000	53,715,000	53,715,000	159,860,000	55,000,000
			마이너스옵션	328,730,000	32,873,000	49,309,000	49,309,000	142,239,000	55,000,000
		4층	기본형	365,600,000	36,560,000	54,840,000	54,840,000	164,360,000	55,000,000
			마이너스옵션	336,230,000	33,623,000	50,434,000	50,434,000	146,739,000	55,000,000
		5층~15층	기본형	373,100,000	37,310,000	55,965,000	55,965,000	168,860,000	55,000,000
			마이너스옵션	343,730,000	34,373,000	51,559,000	51,559,000	151,239,000	55,000,000
		16층~18층	기본형	374,900,000	37,490,000	56,235,000	56,235,000	169,940,000	55,000,000
			마이너스옵션	345,530,000	34,553,000	51,829,000	51,829,000	152,319,000	55,000,000
084.6600A	84A	1층	기본형	485,900,000	48,590,000	72,885,000	72,885,000	216,540,000	75,000,000
			마이너스옵션	442,740,000	44,274,000	66,411,000	66,411,000	190,644,000	75,000,000
		2층	기본형	496,500,000	49,650,000	74,475,000	74,475,000	222,900,000	75,000,000
			마이너스옵션	453,340,000	45,334,000	68,001,000	68,001,000	197,004,000	75,000,000
		3층	기본형	507,000,000	50,700,000	76,050,000	76,050,000	229,200,000	75,000,000
			마이너스옵션	463,840,000	46,384,000	69,576,000	69,576,000	203,304,000	75,000,000
		4층	기본형	517,600,000	51,760,000	77,640,000	77,640,000	235,560,000	75,000,000
			마이너스옵션	474,440,000	47,444,000	71,166,000	71,166,000	209,664,000	75,000,000
		5층~15층	기본형	528,200,000	52,820,000	79,230,000	79,230,000	241,920,000	75,000,000
			마이너스옵션	485,040,000	48,504,000	72,756,000	72,756,000	216,024,000	75,000,000
		16층~25층	기본형	530,800,000	53,080,000	79,620,000	79,620,000	243,480,000	75,000,000
			마이너스옵션	487,640,000	48,764,000	73,146,000	73,146,000	217,584,000	75,000,000
		26층~35층	기본형	536,100,000	53,610,000	80,415,000	80,415,000	246,660,000	75,000,000
			마이너스옵션	492,940,000	49,294,000	73,941,000	73,941,000	220,764,000	75,000,000
084.9700B	84B	1층	기본형	487,700,000	48,770,000	73,155,000	73,155,000	217,620,000	75,000,000
			마이너스옵션	443,850,000	44,385,000	66,577,000	66,577,000	191,311,000	75,000,000
		2층	기본형	498,300,000	49,830,000	74,745,000	74,745,000	223,980,000	75,000,000
			마이너스옵션	454,450,000	45,445,000	68,167,000	68,167,000	197,671,000	75,000,000
		3층	기본형	508,900,000	50,890,000	76,335,000	76,335,000	230,340,000	75,000,000
			마이너스옵션	465,050,000	46,505,000	69,757,000	69,757,000	204,031,000	75,000,000

		4층	**기본형**	**519,500,000**	**51,950,000**	**77,925,000**	**77,925,000**	**236,700,000**	**75,000,000**
			마이너스옵션	475,650,000	47,565,000	71,347,000	71,347,000	210,391,000	75,000,000
		5층~15층	**기본형**	**530,200,000**	**53,020,000**	**79,530,000**	**79,530,000**	**243,120,000**	**75,000,000**
			마이너스옵션	486,350,000	48,635,000	72,952,000	72,952,000	216,811,000	75,000,000
		16층~25층	**기본형**	**532,800,000**	**53,280,000**	**79,920,000**	**79,920,000**	**244,680,000**	**75,000,000**
			마이너스옵션	488,950,000	48,895,000	73,342,000	73,342,000	218,371,000	75,000,000
		26층~35층	**기본형**	**538,100,000**	**53,810,000**	**80,715,000**	**80,715,000**	**247,860,000**	**75,000,000**
			마이너스옵션	494,250,000	49,425,000	74,137,000	74,137,000	221,551,000	75,000,000
084.9300C	84C	1층	**기본형**	**487,500,000**	**48,750,000**	**73,125,000**	**73,125,000**	**217,500,000**	**75,000,000**
			마이너스옵션	444,720,000	44,472,000	66,708,000	66,708,000	191,832,000	75,000,000
		2층	**기본형**	**498,100,000**	**49,810,000**	**74,715,000**	**74,715,000**	**223,860,000**	**75,000,000**
			마이너스옵션	455,320,000	45,532,000	68,298,000	68,298,000	198,192,000	75,000,000
		3층	**기본형**	**508,700,000**	**50,870,000**	**76,305,000**	**76,305,000**	**230,220,000**	**75,000,000**
			마이너스옵션	465,920,000	46,592,000	69,888,000	69,888,000	204,552,000	75,000,000
		4층	**기본형**	**519,300,000**	**51,930,000**	**77,895,000**	**77,895,000**	**236,580,000**	**75,000,000**
			마이너스옵션	476,520,000	47,652,000	71,478,000	71,478,000	210,912,000	75,000,000
		5층~15층	**기본형**	**529,900,000**	**52,990,000**	**79,485,000**	**79,485,000**	**242,940,000**	**75,000,000**
			마이너스옵션	487,120,000	48,712,000	73,068,000	73,068,000	217,272,000	75,000,000
		16층~25층	**기본형**	**532,500,000**	**53,250,000**	**79,875,000**	**79,875,000**	**244,500,000**	**75,000,000**
			마이너스옵션	489,720,000	48,972,000	73,458,000	73,458,000	218,832,000	75,000,000
		26층~33층	**기본형**	**537,800,000**	**53,780,000**	**80,670,000**	**80,670,000**	**247,680,000**	**75,000,000**
			마이너스옵션	495,020,000	49,502,000	74,253,000	74,253,000	222,012,000	75,000,000
084.8600D	84D (복층)	1층	**기본형**	**511,400,000**	**51,140,000**	**76,710,000**	**76,710,000**	**231,840,000**	**75,000,000**
			마이너스옵션	466,990,000	46,699,000	70,048,000	70,048,000	205,195,000	75,000,000
		3층	**기본형**	**533,700,000**	**53,370,000**	**80,055,000**	**80,055,000**	**245,220,000**	**75,000,000**
			마이너스옵션	489,290,000	48,929,000	73,393,000	73,393,000	218,575,000	75,000,000
		5층~13층	**기본형**	**555,900,000**	**55,590,000**	**83,385,000**	**83,385,000**	**258,540,000**	**75,000,000**
			마이너스옵션	511,490,000	51,149,000	76,723,000	76,723,000	231,895,000	75,000,000

※ 본 주택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주택법 제57조 제2항 4의2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 금액이 적용됩니다.

※ **[중요]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분양가는 층별, 타입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전 사이버견본주택 및 팸플릿 등으로 공급가격, 동·호 배치도, 타입별 평면도 및 면적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인지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4.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① 문	문틀(침실 및 욕실 해당), 상부마감판 포함, 내틀 제외, 문짝, 문선	세대현관 방화문 및 디지털도어록, 실외기실 방화문, PL창호(유리 포함), 실외기 시스템루버, 욕실문틀 하부 씰, 발코니2(다용도실) 문 및 하부씰
② 바닥	강화합판마루,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재료분리대, 현관(바닥타일, 걸레받이, 디딤판)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③ 벽	벽지(초배포함), 거실(아트월타일), MDF판, 무늬목시트, 경량벽체, 발코니벽 도장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④ 천장	벽지(초배포함), 우물천장 몰딩, 반자돌림, 발코니천장 도장	경량천장틀 및 석고보드, 우물천장, 커튼박스,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⑤ 욕실	천장재(천장틀포함),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액세서리류, 수전류(발코니 수전 포함), 샤워부스, 욕실장, 비데, 욕실팬, 욕실벽 및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젠다이 상부 인조대리석	시멘트 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⑥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레인지후드, 음식물탈수기 등), 기기류(액세서리류 일체), 수전류, 주방벽 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⑦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⑧ 일반가구	신발장, 팬트리 도어, 드레스룸가구, 화장대, 시스템선반류	-
⑨ 기타	자동 빨래건조대	설비배관, 거실월패드, 소방감지기, 동작감지기, 하향식피난구

※ **마이너스옵션은 선택품목 결정기간 내 선택가능(품목별, 부분별 선택은 불가)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현관중문, 붙박이장, 인덕션, 시스템에어컨 등)'은 선택할 수 없으며,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내,외부 PL창호가 모두 설치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5.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안내**

※ **본 단지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동·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발코니 확장은 일괄 확장을 전제로 하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은 '마이너스옵션'으로 시공됩니다.**

[단위 : 원]

주택형	주택타입	구분	공급가격	계약금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잔금
				계약시	('26.12.16.)	('27.12.16.)	입주시
059.8900A	59A	**기본형**	**6,5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3,500,000**
		마이너스옵션	3,020,000	1,000,000	1,000,000	-	1,020,000
059.9100B	59B	**기본형**	**6,4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3,400,000**
		마이너스옵션	2,890,000	1,000,000	1,000,000	-	890,000
059.6800C	59C	**기본형**	**6,7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3,700,000**
		마이너스옵션	3,220,000	1,000,000	1,000,000	-	1,220,000
059.8000D	59D	**기본형**	**6,6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3,600,000**
		마이너스옵션	3,140,000	1,000,000	1,000,000	-	1,140,000
084.6600A	84A	**기본형**	**7,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000,000**
		마이너스옵션	3,790,000	1,000,000	1,000,000	-	1,790,000
084.9700B	84B	**기본형**	**6,7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3,700,000**
		마이너스옵션	3,480,000	1,000,000	1,000,000	-	1,480,000
084.9300C	84C	**기본형**	**7,7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700,000**
		마이너스옵션	4,270,000	1,000,000	1,000,000	-	2,270,000
084.8600D	84D	**기본형**	**7,2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200,000**
		마이너스옵션	3,710,000	1,000,000	1,000,000	-	1,710,000

■ **추가선택품목 안내**

※ **동·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은 선택 불가합니다.**
※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팸플릿, 사이버견본주택**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는 아래 주택형별 선택품목에 대해 개별 선택이 가능하며 선택품목 미선택 시, **기본품목이 설치**됩니다.
※ **적용된 품목은 성능 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 또는 형태의 변경이 있을 수 있고,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되거나 생산업체의 부도, 납품거부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품목 선택여부에 따라 등기부, 배선기구, 가구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택품목은 동일품목이라 하더라도 평형별 세부 치수 및 구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팬트리의 시스템 선반, 침실1 드레스룸의 시스템 선반, 침실1 파우더룸의 화장대(입식), 주방의 사각싱크볼**은 기본 설치됩니다.
※ **빌트인냉장고장은 국내 주요 브랜드 기준 4도어 냉장고와 3도어 김치냉장고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로159cm x 세로188cm)입니다.**

[단위 : 원]

주택타입	구분		기본품목	선택품목	합계	계약금 (10%)	중도금1차 (15%)	중도금2차 (15%)	잔금 (60%)	비고
						계약시	('26.12.16.)	('27.12.16.)	입주시	
59A	현관	현관 중문	미설치	1 슬라이딩도어(3연동,수동)	1,400,000	140,000	210,000	210,000	840,000	
		신발장하부 조명	미설치	2 신발장하부 간접조명	140,000	14,000	21,000	21,000	84,000	
	주방	아일랜드식탁 상판	인조대리석(MMA)	3 엔지니어드스톤	140,000	14,000	21,000	21,000	84,000	
		주방상판	인조대리석(MMA)	4 엔지니어드스톤	1,105,000	110,000	165,000	165,000	665,000	
		주방벽체	도기질타일							
		냉장고장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5-1 빌트인냉장고장+키큰장	550,000	55,000	82,000	82,000	331,000	5-1 5-2 중 택1
				5-2 냉장고장+수납장	900,000	90,000	135,000	135,000	540,000	
		인덕션	가스쿡탑(3구)	6 인덕션(3구)	550,000	55,000	82,000	82,000	331,000	
		오븐	미설치(하부장)	7 빌트인오븐	490,000	49,000	73,000	73,000	295,000	
		수전	터치형 수전(일반형)	8 터치형 수전(거위목)	무상					
	거실	조명	기본조명(직부등)	9 기본조명(직부등)+간접조명(우물천장)	550,000	55,000	82,000	82,000	331,000	
	침실2,3	붙박이장	미설치	10 붙박이장	3,890,000	389,000	583,000	583,000	2,335,000	
	욕실	스마트 복합 환풍기	기본 환풍기	11-1 욕실1 설치	450,000	45,000	67,000	67,000	271,000	11-1 11-2 11-3

				11-2 욕실2 설치	450,000	45,000	67,000	67,000	271,000	중 택1
				11-3 욕실1, 욕실2 모두 설치	900,000	90,000	135,000	135,000	540,000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에어컨냉매배관만 설치 (거실,침실1)	12-1 거실, 침실1 설치	4,370,000	437,000	655,000	655,000	2,623,000	12-1 12-2 중 택1
				12-2 전실(거실,침실1~3) 설치	7,763,000	776,000	1,164,000	1,164,000	4,659,000	
59B	현관	현관 중문	미설치	1 슬라이딩도어(3연동,수동)	1,400,000	140,000	210,000	210,000	840,000	
		신발장하부 조명	미설치	2 신발장하부 간접조명	140,000	14,000	21,000	21,000	84,000	
	주방	주방상판	인조대리석(MMA)	3 엔지니어드스톤	1,250,000	125,000	187,000	187,000	751,000	
		주방벽체	도기질타일							
		냉장고장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4-1 빌트인냉장고장+키큰장	550,000	55,000	82,000	82,000	331,000	4-1 4-2 중 택1
				4-2 냉장고장+수납장	900,000	90,000	135,000	135,000	540,000	
		인덕션	가스쿡탑(3구)	5 인덕션(3구)	550,000	55,000	82,000	82,000	331,000	
		오븐	미설치(하부장)	6 빌트인오븐	490,000	49,000	73,000	73,000	295,000	
		수전	터치형 수전(일반형)	7 터치형 수전(거위목)	무상					
	거실	조명	기본조명(직부등)	8 기본조명(직부등)+간접조명(우물천장)	550,000	55,000	82,000	82,000	331,000	
	침실2,3	붙박이장	미설치	9 붙박이장	3,890,000	389,000	583,000	583,000	2,335,000	
	욕실	스마트 복합 환풍기	기본 환풍기	10-1 욕실1 설치	450,000	45,000	67,000	67,000	271,000	10-1 10-2 10-3 중 택1
				10-2 욕실2 설치	450,000	45,000	67,000	67,000	271,000	
				10-3 욕실1, 욕실2 모두 설치	900,000	90,000	135,000	135,000	540,000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에어컨냉매배관만 설치 (거실,침실1)	11-1 거실, 침실1 설치	4,028,000	402,000	604,000	604,000	2,418,000	11-1 11-2 중 택1
				11-2 전실(거실,침실1~3) 설치	7,735,000	773,000	1,160,000	1,160,000	4,642,000	
59C	현관	현관 중문	미설치	1 슬라이딩도어(3연동,수동)	1,400,000	140,000	210,000	210,000	840,000	
		신발장하부 조명	미설치	2 신발장하부 간접조명	140,000	14,000	21,000	21,000	84,000	
	주방	아일랜드식탁 상판	인조대리석(MMA)	3 엔지니어드스톤	120,000	12,000	18,000	18,000	72,000	
		주방상판	인조대리석(MMA)	4 엔지니어드스톤	1,079,000	107,000	161,000	161,000	650,000	
		주방벽체	도기질타일							
		냉장고장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5-1 빌트인냉장고장+키큰장	550,000	55,000	82,000	82,000	331,000	5-1 5-2 중 택1
				5-2 냉장고장+수납장	900,000	90,000	135,000	135,000	540,000	
		인덕션	가스쿡탑(3구)	6 인덕션(3구)	550,000	55,000	82,000	82,000	331,000	
		오븐	미설치(하부장)	7 빌트인오븐	490,000	49,000	73,000	73,000	295,000	
		수전	터치형 수전(일반형)	8 터치형 수전(거위목)	무상					
	거실	조명	기본조명(직부등)	9 기본조명(직부등)+간접조명(우물천장)	550,000	55,000	82,000	82,000	331,000	
	침실2,3	붙박이장	미설치	10 붙박이장	3,890,000	389,000	583,000	583,000	2,335,000	
	욕실	스마트 복합 환풍기	기본 환풍기	11-1 욕실1 설치	450,000	45,000	67,000	67,000	271,000	11-1 11-2 11-3 중 택1
				11-2 욕실2 설치	450,000	45,000	67,000	67,000	271,000	
				11-3 욕실1, 욕실2 모두 설치	900,000	90,000	135,000	135,000	540,000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에어컨냉매배관만 설치 (거실,침실1)	12-1 거실, 침실1 설치	4,027,000	402,000	604,000	604,000	2,417,000	12-1 12-2 중 택1
				12-2 전실(거실,침실1~3) 설치	7,305,000	730,000	1,095,000	1,095,000	4,385,000	
59D	현관	현관 중문	미설치	1 슬라이딩도어(3연동,수동)	1,380,000	138,000	207,000	207,000	828,000	
		신발장하부 조명	미설치	2 신발장하부 간접조명	270,000	27,000	40,000	40,000	163,000	
	주방	아일랜드식탁 상판	인조대리석(MMA)	3 엔지니어드스톤	160,000	16,000	24,000	24,000	96,000	
		주방상판	인조대리석(MMA)	4 엔지니어드스톤	1,055,000	105,000	158,000	158,000	634,000	
		주방벽체	도기질타일							
		냉장고장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5-1 빌트인냉장고장+키큰장	550,000	55,000	82,000	82,000	331,000	5-1 5-2 중 택1
				5-2 냉장고장+수납장	900,000	90,000	135,000	135,000	540,000	
		인덕션	가스쿡탑(3구)	6 인덕션(3구)	550,000	55,000	82,000	82,000	331,000	
		오븐	미설치(하부장)	7 빌트인오븐	490,000	49,000	73,000	73,000	295,000	
		수전	터치형 수전(일반형)	8 터치형 수전(거위목)	무상					
	거실	조명	기본조명(직부등)	9 기본조명(직부등)+간접조명(우물천장)	550,000	55,000	82,000	82,000	331,000	
	침실2,3	붙박이장	미설치	10 붙박이장	3,890,000	389,000	583,000	583,000	2,335,000	
	욕실	스마트 복합 환풍기	기본 환풍기	11-1 욕실1 설치	450,000	45,000	67,000	67,000	271,000	11-1 11-2 11-3 중 택1
				11-2 욕실2 설치	450,000	45,000	67,000	67,000	271,000	
				11-3 욕실1, 욕실2 모두 설치	900,000	90,000	135,000	135,000	540,000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에어컨냉매배관만 설치 (거실,침실1)	12-1 거실, 침실1 설치	4,070,000	407,000	610,000	610,000	2,443,000	12-1 12-2 중 택1
				12-2 전실(거실,침실1~3) 설치	6,745,000	674,000	1,011,000	1,011,000	4,049,000	
84A	현관	현관 중문	미설치	1 슬라이딩도어(3연동,수동)	1,400,000	140,000	210,000	210,000	840,000	
		신발장하부 조명	미설치	2 신발장하부 간접조명	170,000	17,000	25,000	25,000	103,000	
	주방	아일랜드식탁 상판	인조대리석(MMA)	3 엔지니어드스톤	140,000	14,000	21,000	21,000	84,000	
		주방상판	인조대리석(MMA)	4 엔지니어드스톤	1,229,000	122,000	184,000	184,000	739,000	
		주방벽체	도기질타일							
		냉장고장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5-1 빌트인냉장고장+키큰장	550,000	55,000	82,000	82,000	331,000	5-1 5-2 중 택1

				5-2 냉장고장+수납장	900,000	90,000	135,000	135,000	540,000	
		인덕션	가스쿡탑(3구)	6 인덕션(3구)	550,000	55,000	82,000	82,000	331,000	
		오븐	미설치(하부장)	7 빌트인오븐	490,000	49,000	73,000	73,000	295,000	
		수전	터치형 수전(일반형)	8 터치형 수전(거위목)	무상					
	거실	조명	기본조명(직부등)	9 기본조명(직부등)+간접조명(우물천장)	610,000	61,000	91,000	91,000	367,000	
	침실2,3	붙박이장	미설치	10 붙박이장	3,430,000	343,000	514,000	514,000	2,059,000	
	욕실	스마트 복합 환풍기	기본 환풍기	11-1 욕실1 설치	450,000	45,000	67,000	67,000	271,000	11-1 11-2 11-3 중 택1
				11-2 욕실2 설치	450,000	45,000	67,000	67,000	271,000	
				11-3 욕실1, 욕실2 모두 설치	900,000	90,000	135,000	135,000	540,000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에어컨냉매배관만 설치 (거실,침실1)	12-1 거실, 침실1 설치	4,443,000	444,000	666,000	666,000	2,667,000	12-1 12-2 중 택1
				12-2 전실(거실,침실1~3) 설치	8,768,000	876,000	1,315,000	1,315,000	5,262,000	
84B	현관	현관 중문	미설치	1 슬라이딩도어(3연동,수동)	1,400,000	140,000	210,000	210,000	840,000	
		신발장하부 조명	미설치	2 신발장하부 간접조명	170,000	17,000	25,000	25,000	103,000	
	주방	아일랜드식탁 상판	인조대리석(MMA)	3 엔지니어드스톤	160,000	16,000	24,000	24,000	96,000	
		주방상판	인조대리석(MMA)	4 엔지니어드스톤	1,128,000	112,000	169,000	169,000	678,000	
		주방벽체	도기질타일							
		냉장고장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5-1 빌트인냉장고장+키큰장	550,000	55,000	82,000	82,000	331,000	5-1 5-2 중 택1
				5-2 냉장고장+수납장	900,000	90,000	135,000	135,000	540,000	
		인덕션	가스쿡탑(3구)	6 인덕션(3구)	550,000	55,000	82,000	82,000	331,000	
		오븐	미설치(하부장)	7 빌트인오븐	490,000	49,000	73,000	73,000	295,000	
		수전	터치형 수전(일반형)	8 터치형 수전(거위목)	무상					
	거실	조명	기본조명(직부등)	9 기본조명(직부등)+간접조명(우물천장)	670,000	67,000	100,000	100,000	403,000	
	침실2,3	붙박이장	미설치	10 붙박이장	3,430,000	343,000	514,000	514,000	2,059,000	
	욕실	스마트 복합 환풍기	기본 환풍기	11-1 욕실1 설치	450,000	45,000	67,000	67,000	271,000	11-1 11-2 11-3 중 택1
				11-2 욕실2 설치	450,000	45,000	67,000	67,000	271,000	
				11-3 욕실1, 욕실2 모두 설치	900,000	90,000	135,000	135,000	540,000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에어컨냉매배관만 설치 (거실,침실1)	12-1 거실, 침실1 설치	4,423,000	442,000	663,000	663,000	2,655,000	12-1 12-2 중 택1
				12-2 전실(거실,침실1~3) 설치	8,115,000	811,000	1,217,000	1,217,000	4,870,000	
84C	현관	현관 중문	미설치	1 슬라이딩도어(3연동,수동)	1,400,000	140,000	210,000	210,000	840,000	
		신발장하부 조명	미설치	2 신발장하부 간접조명	170,000	17,000	25,000	25,000	103,000	
	주방	주방상판	인조대리석(MMA)	3 엔지니어드스톤	1,210,000	121,000	181,000	181,000	727,000	
		주방벽체	도기질타일							
		냉장고장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4-1 빌트인냉장고장+키큰장	550,000	55,000	82,000	82,000	331,000	4-1 4-2 중 택1
				4-2 냉장고장+수납장	900,000	90,000	135,000	135,000	540,000	
		인덕션	가스쿡탑(3구)	5 인덕션(3구)	550,000	55,000	82,000	82,000	331,000	
		오븐	미설치(하부장)	6 빌트인오븐	490,000	49,000	73,000	73,000	295,000	
		수전	터치형 수전(일반형)	7 터치형 수전(거위목)	무상					
	거실	조명	기본조명(직부등)	8 기본조명(직부등)+간접조명(우물천장)	610,000	61,000	91,000	91,000	367,000	
	침실2,3	붙박이장	미설치	9 붙박이장	3,430,000	343,000	514,000	514,000	2,059,000	
	욕실	스마트 복합 환풍기	기본 환풍기	10-1 욕실1 설치	450,000	45,000	67,000	67,000	271,000	10-1 10-2 10-3 중 택1
				10-2 욕실2 설치	450,000	45,000	67,000	67,000	271,000	
				10-3 욕실1, 욕실2 모두 설치	900,000	90,000	135,000	135,000	540,000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에어컨냉매배관만 설치 (거실,침실1)	11-1 거실, 침실1 설치	4,493,000	449,000	673,000	673,000	2,698,000	11-1 11-2 중 택1
				11-2 전실(거실,침실1~3) 설치	7,464,000	746,000	1,119,000	1,119,000	4,480,000	
84D	현관	신발장하부 조명	미설치	1 신발장하부 간접조명	270,000	27,000	40,000	40,000	163,000	
	주방	주방상판	인조대리석(MMA)	2 엔지니어드스톤	1,055,000	105,000	158,000	158,000	634,000	
		주방벽체	도기질타일							
		냉장고장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3-1 빌트인냉장고장+키큰장	550,000	55,000	82,000	82,000	331,000	3-1 3-2 중 택1
				3-2 냉장고장+수납장	900,000	90,000	135,000	135,000	540,000	
		인덕션	가스쿡탑(3구)	4 인덕션(3구)	550,000	55,000	82,000	82,000	331,000	
		오븐	미설치(하부장)	5 빌트인오븐	490,000	49,000	73,000	73,000	295,000	
		수전	터치형 수전(일반형)	6 터치형 수전(거위목)	무상					
	거실	조명	기본조명(직부등)	7 기본조명(직부등)+간접조명(우물천장)	630,000	63,000	94,000	94,000	379,000	
	침실2,3	붙박이장	미설치	8 붙박이장	3,430,000	343,000	514,000	514,000	2,059,000	
	욕실	스마트 복합 환풍기	기본 환풍기	9-1 욕실1 설치	450,000	45,000	67,000	67,000	271,000	9-1 9-2 9-3 중 택1
				9-2 욕실2 설치	450,000	45,000	67,000	67,000	271,000	
				9-3 욕실1, 욕실2 모두 설치	900,000	90,000	135,000	135,000	540,000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에어컨냉매배관만 설치 (거실,침실1)	10-1 거실, 침실1 설치	5,367,000	536,000	805,000	805,000	3,221,000	10-1 10-2 중 택1
				10-2 전실(거실,침실1~3,알파룸) 설치	10,630,000	1,063,000	1,594,000	1,594,000	6,379,000	

6.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공고일 현재 기준, 변동 시 별도 안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시 선납할인 기준일 변경으로 인해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공고일 현재 연 7.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상기 선납할인율,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우리공사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선납할인율의 경우 선납 시점의 이율을 적용하고, 연체이율의 경우 이율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율변경을 사유로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 등의 산정은 평년의 경우 1년을 365일로 보며,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Ⅱ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 · 자산]

1.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대전대동2 1블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및 제25조,「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229호(2019.12.16.)」에 의해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미달 물량 발생 시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특별공급 예비자 선정 시 지역우선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5.10.17.)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대전광역시)	100%	·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4.10.17 이전부터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거주 ('24.10.17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기타지역	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주택건설지역(1년 미만 거주자 포함),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분

※ 동일순위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금회 공급하는 **대전광역시의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별도의 **거주제한기간(1년)**이 있으므로,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청약할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2025.11.07.)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혼인신고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주택공급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3.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

■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보유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자산보유기준산정 대상에서 제외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우리 공사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17.)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전용면적 60㎡이하)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제4항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에 따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 소유 주택도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자산보유기준</th><th colspan="2">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215,500천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 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건 물</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r><td colspan="2">시설물</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구 · 읍 ·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 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r><td>자동차</td><td>45,630천원
이하</td><td colspan="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td></tr>
</table>

※ **(출산가구 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구분	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부동산(건물+토지)	237,050천원 이하	258,600천원 이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참고
자동차	50,200천원 이하	54,760천원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차량기준가액 자료 출처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5년식 자동차를 2024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4. 소득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

■ 소득기준 적용

- 우리 공사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17.)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이하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단위 : 원]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일반공급(60㎡ 이하)	신생아 우선공급(5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우선공급(1순위자)(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추첨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다자녀가구	우선공급(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노부모부양	우선공급(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생애최초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일반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신혼부부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배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5,764,250	6,862,470	7,224,838	7,786,469	8,348,099	8,909,7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일반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신생아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일반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807,968	12,867,132	13,546,572	14,599,629	15,652,686	16,705,743
	배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5,764,250	6,862,470	7,224,838	7,786,469	8,348,099	8,909,7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702,038원) 추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단위 : 원]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90%**	6,484,781	7,720,279	8,127,943	8,759,777	9,391,612	10,023,446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7,925,843	9,435,897	9,934,153	10,706,395	11,478,636	12,250,878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10,807,968	12,867,132	13,546,572	14,599,629	15,652,686	16,705,74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60%**	11,528,499	13,724,941	14,449,677	15,572,938	16,696,198	17,819,45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70%**	12,249,030	14,582,750	15,352,782	16,546,246	17,739,711	18,933,17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10%**	15,131,155	18,013,985	18,965,201	20,439,481	21,913,760	23,388,04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20%**	15,851,686	18,871,794	19,868,306	21,412,789	22,957,273	24,501,756

• 가구원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 기준
신혼부부·다자녀·신생아 특별공급, 일반공급(60㎡이하)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구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일반공급(60㎡이하),신혼부부·다자녀· 노부모·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위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의 소득자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될 수 있으며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국민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 자료→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자료를 적용합니다.**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 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Ⅲ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17.)**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항 제27호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대전시 시책 대상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장애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북한이탈주민), 국가보훈처(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방부(10년 이상 복무군인), 한국산업인력공단(우수기능인), 대전세종지방중소기업청(중소기업근로자), 대전광역시(의사상자), 통일부(납북피해자), 대전광역시(다문화가족), 대한체육회(우수선수),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대전광역시(대전시 시책)

■ **유의사항**

-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5.10.27.)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중요]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생아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17.)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미만**(2006.10.18 ~ 2025.10.17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다자녀가구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다자녀가구 추첨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금회 공급하는 **대전광역시의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별도의 **거주제한기간(1년)**이 있으므로,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청약할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중요]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4명 이상	40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0명	0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해당없음	0	
무주택 기 간 (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없음	0	
해당 시·도 거주 기간 (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만19세 이후에 **대전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미거주	0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해당없음	0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무주택 기간(4) 산정 : 신청자가 만19세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되, 신청자 및 배우자가 각각의 과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체기간으로 판단 (단,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은 무관)

예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7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하고 25세에 혼인)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3)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7세인 배우자(25세에 혼인 이후 소유하던 주택을 26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1년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신청자가 만19세 이후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예3)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3년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17.)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노부모부양 추첨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예시 1: 공급신청자가 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예시 2: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금회 공급하는 **대전광역시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별도의 **거주제한기간(1년)**이 있으므로,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청약할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특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2024. 6. 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중요]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17.)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로 한정한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신청자의 태아포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생애최초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생애최초 추첨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023. 3. 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023. 3. 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금회 공급하는 **대전광역시의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별도의 **거주제한기간(1년)**이 있으므로,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청약할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또는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혼인신고일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의 **130% 이하(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중요]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5.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17.)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우리 공사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단, 추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신혼부부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신혼부부 추첨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금회 공급하는 **대전광역시의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별도의 **거주제한기간(1년)**이 있으므로,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청약할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예비신혼부부 제외)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혼인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혼인특례 및 출산특례 중복 적용은 불가하므로, 청약 신청 전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청약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

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출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로 확인합니다.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하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가점기준				비 고
기준			점수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1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해당없음	0	
나.	자녀의 수	3명 이상	3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2명	2	
		1명	1	
		0명	0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해당없음	0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12회 이상 24회 미만	2	
		6회 이상 12회 미만	1	
마.	혼인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3년 이하	3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선택 불가
		3년 초과 5년 이하	2	
		5년 초과 7년 이하	1	
		7년 초과	0	
바.	자녀의 나이 (한부모가족에 한함)	2세 이하(만3세 미만)	3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2세 초과 4세 이하(만5세 미만)	2	
		4세 초과 6세 이하(만7세 미만)	1	
		해당없음	0	

※ '가. 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단위 :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5,764,250	6,862,470	7,224,838	7,786,469	8,348,099	8,909,7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자녀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를 말함)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마. 혼인기간' 관련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중요]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6. 신생아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17.)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2세가 되는 날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출생)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합니다. 서류 미제출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상태가 입주기간 시작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입주기간 시작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신생아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807,968	12,867,132	13,546,572	14,599,629	15,652,686	16,705,743
신생아 추첨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금회 공급하는 **대전광역시의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별도의 **거주제한기간(1년)**이 있으므로,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청약할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항목**

배점기준				비 고
기준			점수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1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해당없음	0	
나.	미성년 자녀의 수	3명 이상	3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2명	2	
		1명	1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해당없음	0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12회 이상 24회 미만	2	
		6회 이상 12회 미만	1	

※ '가. 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단위 : 원]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5,764,250	6,862,470	7,224,838	7,786,469	8,348,099	8,909,7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미성년 자녀의 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중요]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생아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7.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17.)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 (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②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에만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전용면적 60㎡이하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우선공급 (1순위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추첨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③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에만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금회 공급하는 **대전광역시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별도의 **거주제한기간(1년)**이 있으므로,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청약할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 자녀가 있는 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5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동일 지역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전용 40㎡초과]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해 당 사 항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1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Ⅱ. 신청기준의「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 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만32세 미혼(만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 현재 만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2단계 우선공급(1순위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낙첨자**(**<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로 한정)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소수점 이하는 올림)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잔여 물량**을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과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및 2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해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 자녀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5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동일 지역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우선공급(1순위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낙첨자**(**<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로 한정)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소수점 이하는 올림)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잔여 물량**을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과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및 2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해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당첨자는 다음 각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생)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합니다. 서류 미제출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상태가 입주기간 시작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입주기간 시작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 기타지역을 구분하여 접수받고, 신청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중요]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Ⅳ 신청 시 확인사항

1.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청약 신청 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 인증서 인증→ 조회기준일 입력→ 조회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재당첨제한, 특별공급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3. 주택소유확인	
4.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혼인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생아·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 · 장애인 · 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신청방법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일자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청약을 하고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주택 우선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2페이지 참조)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대전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구주민으로서 **본 단지를 우선공급 받으신 지구주민 및 세대구성원**(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동 지구주민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 후 당첨되더라도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단,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 또는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외 예비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기관추천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4. 예비입주자 등에 대한 사항

■ **공통 적용사항**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본청약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특별공급에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대전충남지역본부 판매팀을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전체 공급량의 50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합니다. 각 주택형별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순위·순차제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동일 지역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Ⅴ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대전시책)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생아 특별공급	2025.10.27(월) (10:00 ~ 17:00)	인터넷 신청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일반공급	•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1순위자), 추첨공급	2025.10.28.(화) ~10.29(수) (10:00 ~ 17:00)		

※ 본 단지의 경우 KB부동산 웹/앱을 통해서도 청약신청 및 신청내역 결과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접속경로 : KB부동산 웹/앱 접속 → 메뉴 → 공공주택 → LH청약전용관)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팸플릿 및 사이버견본주택 등으로 동 · 호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모든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약하려는 경우 인증서를 구비하여 방문하시면 우리공사 직원이 현장에서 인터넷 대행접수를 도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기관추천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입주자저축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의 대행접수는 불가합니다.

■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Ⅵ.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접수 마감 후 특별공급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 대상물량은 **2025.10.27(월) 오후9시 이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입니다.

Ⅵ 신청방법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1. PC인터넷 · 모바일 신청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동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선택 → 특별공급신청(기관추천/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일반공급**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선택 → 일반공급신청(신생아우선공급/우선공급(1순위자)/추첨공급)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기간 : (특별공급) 2025.10.27.(10:00~17:00), (일반공급) 2025.10.28.(10:00) ~ 2025.10.29.(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17.)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대전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 그 외 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2. 현장방문 인터넷 대행접수 안내 [인증서 미소지자 및 인터넷 사용불가자]

■ **대행접수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신청자 본인이 신청 장소(분양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시간 2시간 이전까지 방문**하여 인터넷 대행접수요청서를 작성하신 분에 한하여 인터넷대행 접수서비스를 해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접수시간 : 10:00 ~ 15: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인터넷 대행접수는 고객님이 알려주시는 정보를 우리공사 직원이 입력하면서 인터넷청약을 진행합니다. 인터넷 대행접수 시 고객님이 현장에서 모든 입력정보를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입력내용 미확인 등으로 부적격 처리될 경우 모든 책임은 고객님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 대행접수 이후에는 변경·취소가 불가능하며, 변경·취소 시에는 본인이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발급하여 직접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수정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대행접수와 관련한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전에 분양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접수 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1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및 아래 표의 구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며 증빙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신청 시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② 도장(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③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등·초본은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표기되도록 발급	
	④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신청시 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일 것 ※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 본 공고문과 함께 첨부	① (신청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 본 공고문과 함께 첨부
	② 신청자의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② 신청자의 서명사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 반드시 명기할 것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Ⅶ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택품목 결정	계약체결	
	온라인제출	방문제출	온라인	전자계약	현장계약
'25.11.07.(금) 16:00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25.11.10.(월) 10:00 ~ 11.11.(화) 17:00	'25.11.12.(수) ~ 11.14.(금) 10:00~17: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25.12.22.(월) 10:00 ~ 12.23.(화) 17:00	'25.12.26.(금), 12.29.(월) 10:00~17:00	'25.12.30.(화) ~ 12.31.(수) 10:00~17: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현장)** 서류제출 및 현장계약체결 장소 : 대전대동2 1블록 분양사무실(대전 서구 둔산중로 108, LH 1층) • **(온라인-서류제출)** ※ 전산오류 가능성 및 서류 보완기간을 고려, **온라인 제출기간은 11.10.(월) 10:00 ~ 11.11.(화) 17:00로 한정합니다.** ※ **공사가 서류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 서류의 온라인 제출은 온라인 제출기간 내**(11.10.(월) 10:00 ~ 11.11.(화) 17:00)**에만 가능하며, 해당 기한 이후에는 방문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 P C :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 하단의 '2.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제출'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선택품목 결정)** - PC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공간옵션 및 선택품목 결정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공간옵션 및 선택품목 결정 • **(온라인-전자계약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결과조회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청약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특별공급(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소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대전충남지역본부 판매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2025.11.10.~2025.11.14.)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1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서류제출 방법

- **① 온라인 제출(전자파일 업로드), ② 방문제출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온라인 서류제출 안내 : 2025.11.10.(10:00) ~ 2025.11.11(17:00)

- **'온라인 서류제출' 서비스**는 서류제출 대상자가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PC, 모바일)을 통해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공동인증서(개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로 로그인 후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서비스**입니다.
- **온라인 서류제출 경로**
 - PC :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 온라인 서류제출 이용 시 상기에 언급한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인증서가 기한 만료 등으로 사용 불가하지 않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서류제출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웹) 또는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브라우저로 접속하는 경우는 접수 불가합니다.

 ※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한 모바일 서류접수는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는 서류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서류제출은 제출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제출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 전에 미리 여유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장애 등으로 온라인 서류제출이 중단될 경우 방문제출하여야 합니다.**

 ※ 방문제출은 마감시간 전까지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으로 **제출가능한 파일은 서류를 스캐너로 스캔하거나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하여 생성한 파일, '정부24'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PDF파일로 저장하여 발급받은 파일(행정서류, 권장방식)에 한합니다.** (주요 행정서류별 인터넷 발급 사이트는 LH청약플러스 안내 참조)
-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 미리보기 화면 캡처,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번에 한 장씩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하였을 때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 파일형식은 7종(JPG, JPEG, GIF, PDF, TIF, TIFF, PNG, ZIP)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
-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첨자(예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 **온라인 서류제출 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한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에 응답(제공요구)할 경우, [연계서류 목록]에 포함된 서류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연계서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서류는 첨부서류 파일 추가를 통해 직접 제출(업로드)하셔야 합니다.**

 ※ 연계서류 목록(총 8종)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 **공공마이데이터의 경우 당첨자(예비자) 본인 및 모든 세대구성원이 제공요구에 응답(세대원 본인인증)한 경우에만 연계가 가능**하며, **1명이라도 미응답 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세대원이 제공요구 응답절차를 진행할 경우, 당첨자(예비자) 본인이 공공마이데이터 제공요구에 응답한 항목을 그대로 연동하여 제공요구 진행됩니다.

 ※ 세대원 본인인증 경로

 PC :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내 '세대원 본인인증' 탭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내 '세대원 본인인증' 탭

② 방문 제출 안내 : 2025.11.12. ~ 2025.11.14.(10:00~17: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대전대동2 1블록 분양사무실(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 1층)에 방문하여 제출**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배우자는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1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는 별표(*) 없이 전체 숫자 표기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②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상기 등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자산·소득 조회용)	본인 및 세대구성원	**※ (본 공고문과 함께 양식 첨부)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④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2세 미만 자녀(입양 포함) 증빙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⑥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⑦ 재직증명서 (복무확인서)	본인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서 신청하고자 할 경우
	○	⑧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공공주택 60㎡이하의 경우]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임신중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세 미만 자녀,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나,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⑨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 내역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쳐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⑩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등 양육사실 확인
	○	⑪ 통장사본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급여 수령 내역 확인
	○	⑫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⑬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17.)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의 서류 모두 제출
	○	⑭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및 세대원	•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	⑮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세 미만 자녀, '23.3.28.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⑯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공사 제공 양식)

■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당첨자 제출서류 : 공통서류와 특별공급 유형별 서류 추가 제출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1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는 별표(*) 없이 전체 숫자 표기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②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예비)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상기 등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자산·소득 조회용)	본인 및 세대구성원	**※ (본 공고문과 함께 양식 첨부)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④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예비)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특례 관련]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 가 있어 출산특례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⑥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⑦ 재직증명서(복무확인서)	본인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서 신청하고자 할 경우
		○	⑧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임신중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나,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17.)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의 서류 모두 제출
		○	⑩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예비)배우자, 세대원	•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	⑪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⑫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공사 제공 양식)
		○	⑬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출산특례 관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공사 제공 양식)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공사 제공 양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②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08.1.1. 전에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④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피부양 직계존속	•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의「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만 해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제출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예비)배우자	•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예비)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예비신혼부부로서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③ 기본증명서	자녀	• 1순위자로서 혼인기간 중 자녀 출생 일자 확인 필요 시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 입양의 경우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예비)배우자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본 공고문과 함께 양식 첨부)
		○	⑦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	⑧ 예비신혼부부 확약서	본인 (예비)배우자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 확인서 제출(공사 제공 양식)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 전 재당첨, 주택소유사실 여부 확인
		○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③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9> 참고)**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9>**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신생아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 전 당첨 여부 확인
		○	②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2세 미만 자녀를 증빙하고자 하나, 출생 신고 전인 경우
		○	③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2세 미만 자녀를 증빙하고자 하나, 출생 신고 전인 경우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 함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이어야 함
		○	⑤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공사 제공 양식)
	○		⑥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본인 또는 배우자	• (양육사실 증빙)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쳐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⑦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양육사실 증빙)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등 확인
	○		⑧ 통장사본	본인 또는 배우자	• (양육사실 증빙) 급여 수령 내역 확인

<표9>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공고일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및 납세증명서 포함) (공고일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세증명서(종합소득세신고자용)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해당직장 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세무서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1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현장계약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 (계약금 : 주택공급금액의 10% + 발코니확장금액의 계약금(1백만원) + 추가선택품목의 10%)
		② 계약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③ 도장 (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전자계약	① 계약자 본인명의 휴대폰
		② 계약자 본인명의 공동인증서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일 것 ※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 본 공고문과 함께 첨부	① (계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 본 공고문과 함께 첨부
	② 계약자의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② 계약자의 서명사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 반드시 명기할 것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시, 등기는 전자등기 방식이 원칙이며,** 비전자 등기 시 등기소에서는 전자계약서 출력물을 인정하지 않고, 출력물에 거래당사자 등의 인장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10:00~17: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17: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10:00~17:00)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 계약 체결기간 내 현장 계약 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입금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SMS 발송) *평일 업무시간 (10:00~17:00)에 한하여 확인 가능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로그인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 계약체결 (공동인증서)	→ 계약서 출력

• **부부공동명의 등 전매, 마이너스옵션 선택,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후,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전자계약의 해제 후 현장계약 재체결 필요)**

Ⅷ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분양사무실 및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 · 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주택가격(추가선택품목 가격 포함)의 10퍼센트 및 발코니확장금액의 계약금(1백만원)]을 공제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주택법」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대전충남지역본부 판매팀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개인정보변경]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현 관	마루굽틀 경사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주 방	좌식 씽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거실	비디오폰 높이조정, 야간 센서등	
욕실 1개소	단차 없애기, 출입문 방향 조정, 좌식 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절, 높낮이조절 세면기 *욕실 내부로 휠체어 진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시각장애인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의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신청시기** : 최초 현장 계약체결기간 (2025.12.30.~2025.12.31.) 내 **※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4. 지구 및 단지 여건

■ 지구 여건

-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등 상위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 중에 변경,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등의 인허가는 지자체 협의, 공사 추진현황 및 제영향평가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인근 공동주택 단지에는 공공분양·공공임대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제영향평가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매각용지(준주거, 근린생활시설, 공공용지, 주차장 등)는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외의 도로 및 기반시설 등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고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근처에 대동역 및 대전역이 위치해 있으며, 지구 북측에 대전여고와 한밭여중이 위치해 있습니다.

■ 단지 외부 여건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청약·상담창구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단지) 위치 및 주변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대동2 지구환경개선사업 내에 위치하여 입주시 조성공사 및 주변 건축 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으로는 공공임대 주택이 예정되어 있으며, 인접 공원 및 녹지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여건 관련 CG(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및 제작 상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인접하여 지나는 도로에 의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확인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 건물 및 시설, 당 아파트 배치구조 또는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 전 사업부지 인근 방문을 통하여 주변시설을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와 인접하여 전력공급을 위한 가공선로 및 전신주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전력공급기관(한국전력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주변 건물 및 도로 여건과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단지 내부 여건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조명, 소음 및 매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보행자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단지명칭·동표시·아파트 문양·BI로고·벽체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의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일부 동은 1개층 필로티로 시공되어,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4동 1호라인 1,2층은 이해를 돕기 위해 팸플릿 동호배치도 상 필로티로 표기하였으나, 실제 시공은 피트(PIT)개념의 폐쇄구조로 통행(관통)이 불가한 형태로 시공됩니다.
-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레벨 차이 및 단지 외부 연결 보행통로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 및 단지레벨, 시설물, 보행통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 및 상업시설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지구단위계획지침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생울타리 담장,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재질, 형태, 시공구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도, 조경,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 결과에 따라 소방차전용도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자동차 소음 및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전면, 후면 조경 공간에는 이동식피난기구(공기안전매트) 사용을 위해 일부 식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부대시설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시설은 지역 주민이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단지 내 도로 등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급배기구, DA(환기구) 및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분리수거함) 인접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입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불가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다리차 이용불가 시 엘리베이터 이용)
- 세대별 현관 주변 및 엘리베이터 홀에 TPS/EPS실이 위치하여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활동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비상발전기의 주기적 시험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진동 및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설치위치: 지하주차장 106동~108동사이)
- 단지 내 일부저층 세대는 보안등 불빛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근에 출차주의 경광등이 설치되며, 인근 동에 소음 및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다소간의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전력, 수도, 가스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지상에 일부 시설물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은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식재(규격, 수종, 위치 등) 및 시설물(재료, 형태, 위치 등) 시공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옹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및 상가 전력공급설비인 한전 PAD TR 및 PAD SW가 단지 내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인접세대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분리수거함) 및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분리수거함)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후 설치될 예정이며, **특히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분리수거함)는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1층을 포함한 저층 세대는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합니다.**
- 주차장은 세대당 약 1.30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 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 인근 주차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절창고의 환기와 결로방지를 위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주변에 지하주차장 팬룸 환기구, 기타 지상 돌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의 팬룸 및 환기탑 외부 마감은 석재질감의 도료 마감으로 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내부 바닥과 경사로는 우기 및 동절기 등 기상여건에 따라 바닥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팬룸이 설치되어 있으며 팬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1, 2층 차로의 높이는 2.7m(주차 높이 2.5m), 지하 3층은 2.3m(주차 높이 2.1m)로 계획되었으며, 지하주차장 1, 2층의 경우, 소형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하며, 이로 인한 시설물 파손 등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하주차장 1, 2층의 경우에도 라멘구조 특성상 일부 구간은 소형택배차 진입 불가 구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주차장 설치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주차대수 (세대당)	구분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일반	장애인	전기차	일반	장애인	전기차	일반	장애인	전기차	일반	장애인	전기차
1,479대 (1.3대)	계	100대	-	13대	1,253대	44대	61대	7대	1대	-	-	-	-
	1층	100대	-	13대	58대	4대	11대	7대	1대	-	-	-	-
	2층	-	-	-	433대	15대	22대	-	-	-	-	-	-
	3층	-	-	-	762대	25대	28대	-	-	-	-	-	-

- 장애인 및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위치는 각 동별로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주차구획 위치 및 주차대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에 설치 예정인 전기차 충전기 48대 중 15대는 급속충전기, 33대(1채널 7대, 2채널 26대)는 완속충전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과 각 동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이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동별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합니다.
- 지하주차장 층수는 3개층이나 단지 고저차에 따라 동별로 이용 층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위치 및 대수는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집 등 보육 관련 시설은 지자체 의견 등을 참고하여 국공립 또는 외부위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운영방식에 따라 단지 외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보관함은 각 동 지하 출입구 옆 1개소씩 설치될 예정으로 아파트 라인별로 접근 동선이 다르게 되어 일부 라인 세대는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본 단지에 적용된 각종 마감재 및 입면,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아파트 각 층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의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상이하여 환기 및 채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공간화 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승인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법규 및 관련 심의, 기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1층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취입구가 설치됩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내부마감이 없으며 별도의 실(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외관 디자인 계획에 의해 일부 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고, 강우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제품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세대 바닥재, 벽지 및 벽타일, 인조대리석 등은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부위별로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목문틀 및 각종 몰딩 등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고정용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벽지(도배) 공법상 봉투(테두리)바름으로 시공 시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방과후교실,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멀티프로그램실, 키즈(주민)카페, 웰컴라운지, 계절창고, 키즈스테이션 등이 있으며, 실내가구, 비품 등 내부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단, 피트니스센터에 운동기구가 제공될 예정이며, 제공되는 운동기구(의자, 소파, 이동식가구 등 기타 비품은 일체 제공되지 않음)에 대해서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외부(1층 또는 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되며 가동 시 일부 인접세대는 소음·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이 혼용 배치된 주동(101동,109동,110동,111동,112동,113동)의 경우 소음, 빛공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관, 발코니, E/V홀 등의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에서 시공오차 발생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 및 주방벽 하부는 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출입문은 합성수지 재질이며, 욕실 천장재는 ABS 판넬로 시공되며 천장에 점검구 시공 예정입니다.
- 각 단위세대 형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길이가 서로 상이합니다.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이며, 일부 발코니에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의 외부 창호, 유리, 석재, 석재뿜칠(석재질감의 도료) 등의 마감재 색상과 형태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공사용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본공사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 천장고는 2.3m로 시공 오차에 의해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구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주방가구, 강화합판마루, 알루미늄창호 등의 자재는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 예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장류[붙박이장(유상옵션), 신발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 있는 벽, 바닥, 천장은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각종 벽·바닥 타일 및 아트월타일 나누기는 하자예방, 미관개선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부 주택형은 발코니(세탁실)공간 및 입구가 협소하여 대용량 세탁기 및 건조기 설치가 제한되거나, 세탁기문과 벽 및 기타 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세탁실) 선반은 설치되나, 세탁기와 건조기 수직설치 시 선반 활용이 불가합니다.
- 84D타입 주방 입구의 하부장은 냉장고 등 반입을 위해 이동이 가능한 가구 형태로 설치됩니다.
- 복층 일부세대(84D타입/5,6호 라인 해당) 상부층 침실1 세대경계벽의 일부구간은 건식벽체(내화구조)로 시공됩니다.
- 복층세대(84D타입)의 경우 복도형으로 계획되어 세대 진·출입 시 인접세대와 동선이 간섭될 수 있고, 세대 내부 계단을 통한 가전, 가구 등의 이동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복층세대(84D타입)의 내부 계단은 금속재질(디딤판 집성목 마감)로써 뛰거나 빠른 이동 시 울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냉장고장 유상옵션 선택 시 냉장고 상부장 처짐 방지을 위해 보강철물이 노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개별난방입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자동식소화기 또는 레인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평형은 상부장의 일부가 조정되어 수납 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 배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며 침실 및 거실벽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 감압밸브를 설치하여 균등한 급수공급압력을 계획하고 있으나, 급수펌프 구획별 또는 단지 레벨차에 의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욕실천장에 설치되는 욕실팬은 평형별로 설치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장에 설치된 점검구는 별도로 고정하지 않으며, 문을 여닫을 경우 기류에 의해 들썩임 및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2(부부욕실)에 설치되는 레인형 샤워기 사용 후 샤워 헤드 내 잔류수가 떨어질 수 있으며, 수압이 다소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욕실 양변기는 절수형이 설치되므로 세정력이 다소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 높이는 바닥 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장 내부는 직상층 세대 화장실의 배관이 통과하므로 소음이 있을 수 있으며, 천장에는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욕실팬 가동 및 정지시 냄새 및 습기 역류방지를 위한 전동댐퍼가 연동하여 작동하므로 댐퍼 작동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천장 점검구와 전등 및 환풍기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 환기는 기계환기방식(강제급기+강제배기)을 적용하며, 덕트 및 디퓨져는 거실과 각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실에는 배기 디퓨저만 설치)
- 세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환기유니트) 및 덕트가 실외기실 천장에 노출 시공됩니다.
- 84D타입 세대는 층별로 전열교환기가 설치되며, 하층의 경우 세대 내 천장에 매립 되어 커버가 노출됩니다.
- 세대 내 실내 환기설비의 환기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는 제품설명서에 따라 필터를 정기적으로 점검 또는 교체(별도구매)하여야 합니다.
- 주방배기는 레인지후드에서 각 세대 외벽으로 바로 나가는 당해층 배기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며, 주방창문 등을 통한 타 세대의 냄새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 각 실별 전등 스위치 및 온도 조절기 위치 및 형태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일러 연도, 환기캡 등 일부 시설물이 외부에 노출됨에 따라 우천 시 빗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장기간 부재할 경우 배관이 동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탁실 또는 발코니 천장에 자동 빨래 건조대가 설치되며, 사용 시 주변 시설물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 및 점검홀이 세대 내외에 설치됩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우수용,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고,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 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드레인 및 배관의 위치와 개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전열교환기(환기유니트)는 원활한 유지관리 및 타 시설물과의 간섭 등을 고려하여 본 공사 시 설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타입에 따라 설치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이 세대 내부에 있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팸플릿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설계부하용량은 59타입은 4,770VA이며, 84타입은 6,520VA입니다. (시공 중 부하용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를 제외한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며, 하향식피난구는 바닥타일보다 높게 설치되므로 실외기실 이용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설이므로 화재 등 비상시에만 개방하여야 하며 피난구 개방에 따른 인접세대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리는 입주자의 책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천장에는 상부 세대의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므로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설물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상부 세대 하향식 피난구 사다리 전개를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물건 적치가 불가합니다.
- 84D타입 세대는 구조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피난계획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 필로티, 부대시설 직상부 세대에는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천장에 상부세대의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됩니다.
- 필로티, 부대시설 직상부 세대에는 하향식 피난구 대신 완강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해당공간의 창호, 루버형태 및 문의 재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공간 상부에 전열교환기(환기유니트)가 하향식 피난구 위치에 따라 층별 교차 설치 될 예정입니다.
- 실외기실에는 철제 방화문이 설치될 예정으로,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실외기실은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하여야 하는 공간이므로,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과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 가동으로 전기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엘리베이터 내부 천장 공기유입은 에어컨(냉방장치)이 아닌 환기팬에 의한 것입니다.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6조)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에는 일부 세대의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 기본설치 품목인 에어컨용 냉매 매립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만 설치되며,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냉매박스 설치 및 도배 후 스티커로 위치 표시함)
- 시스템에어컨(유상옵션) 선택 시 기본설치 품목인 냉매 매립배관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시스템에어컨(유상옵션)은 무선리모컨을 통해 작동되며 거실 월패드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유상옵션) 선택 이후, 입주민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시스템에어컨 추가 설치 요청 또는 설치위치 변경 등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유상옵션) 선택 시 발코니 및 실외기실 등에 관련 배관이 노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자동 루버창이 설치되지만, 루버창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에어컨(실외기)이 가동될 경우 과열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오니 사용 및 유지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되는 쿡탑 유형(가스,전기)에 따라 소방 관련 법령에 적합한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 이후 입주자 사정으로 쿡탑 유형을 변경할 경우에 소방 법령에 적합한 자동식소화기로 변경해야 될 수 있으며, 공사에 따른 배관,배선 노출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중계장치는 107동, 111동 옥상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동통신 서비스 안테나를 107동, 111동, 지하주차장 팬룸(2개소), 지하층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단, 설치 장소 및 설치 수량은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11동 옥상에 지상파(디지털)안테나 및 무궁화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수신여건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CCTV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각 동 출입구와「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지하주차장에 설치됩니다.
- 세대 무인경비 동작감지기는 1,2층 및 최상층은 발코니 및 침실의 창호 측면부 각 1개소에 설치되며, 그 외층 동작감지기는 거실 창호 측면부 1개소에 설치됩니다.
- 홈네트워크시스템 세대단말기(WallPad10"LCD)는 게이트웨이 일체형으로 방범서비스(도어카메라, 현관자석감지기 및 동작감지기와 연동), 제어서비스(가스밸브차단, 거실 및 침실1 네트워크스위치조명, 난방온도, 환기설비, 디지털도어록), 비상상황 알림 서비스(욕실비상호출버튼), 대기전력차단서비스(대기전력차단스위치 연동), 단지공용기본서비스(공동현관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차량통제시스템연동)를 제공합니다.

- 생활정보기가 설치되며, 일괄소등, 날씨정보, 엘리베이터호출 및 가스차단 기능을 제공합니다.
- 단지 내 출입구에 디지털차량번호인식시스템의 주차관제(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가능면수 안내시스템이 설치됩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동은 차량 진·출입 시 경보음 발생과 차량전조등 불빛 및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의 보안등, 가로등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전기콘센트는 세탁기 및 환기유닛 전원용, 보일러 및 CO감지기용, 실외기실 루버용 콘센트가 설치됩니다.
- 인덕션(유상옵션) 선택여부와 관계 없이 전 세대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됩니다.
- 세대 가스쿡탑은 가스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사이버 주택전시관 전시품과 실제 시공모델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침실1에는 에어컨용 콘센트가 설치되나, 시스템에어컨(유상옵션) 신청 시 전원 공급용 별도 전원이 설치되므로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승강로 및 권상기실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이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유도등 등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세대 내 통신단자함은 59A,B,C타입은 현관 팬트리, 59D타입은 침실2 출입문 뒷면, 84타입은 현관 팬트리에 설치되며, 세대분전반은 59타입 및 84A,B타입은 침실2 출입문 뒷면, 84C타입은 침실1 출입문 뒷면, 84D타입은 알파룸 출입문 옆면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단, 마감 벽체의 변경 등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는 조정될 수 있음)
- 59A타입 중 일부 동(109동,112동)의 드레스룸은 0.5창이 적용됩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팬던트형으로 설치되며 위치이동은 불가합니다.
- 최상층 세대의 발코니 조명기구와 스피커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세대는 천장형으로 설치됩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일부동· 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
- 일부동 지붕층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집광판이 설치되며,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각동별 설치면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 일반사항

- 주민공동시설 중 일부 공간은 입주 후 일정기간 A/S센터로 운영됩니다.
-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예정된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인한 층간, 세대 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정비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기타 디자인 등의 변경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잔금완납 포함)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 또는 끝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일러스트(그림) 등은 신청자(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제작 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각종 홍보물(팸플릿 등)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시공은 준공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세대 내 침실별 가구를 개별적으로 추가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5.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주택법」 제3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표시함

성능부문	성능항목	성능등급
소음 관련 등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	★★
	화장실 급배수 소음	★
구조 관련 등급	내구성	★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환경 관련 등급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에너지 성능	★★★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저탄소 자재의 사용	★★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절수형 기기 사용	★★★
	물사용량 모니터링	★★

	자연지반 녹지율	★
	생태면적률	★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생활환경 관련 등급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대중교통의 근접성	★★★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생활편의시설의 근접성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세대 일조 확보율	★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방범안전 콘텐츠	★★
화재 · 소방 관련 등급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성능	★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피난설비	★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득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6.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 용
외벽(직접면)	적 용
외벽(간접면)	적 용
창호(직접면)	적 용
창호(간접면)	적 용
지붕	적 용
바닥(직접면)	적 용
바닥(간접면)	적 용
바닥(층간바닥)	적 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 용
일괄소등스위치	적 용
고효율LED	적 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 용
절수설비	적 용
고효율설비	적 용

7. 마감자재 목록표

■「주택법」 제54조제4항제1호 규정에 따라 (사이버)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팸플릿,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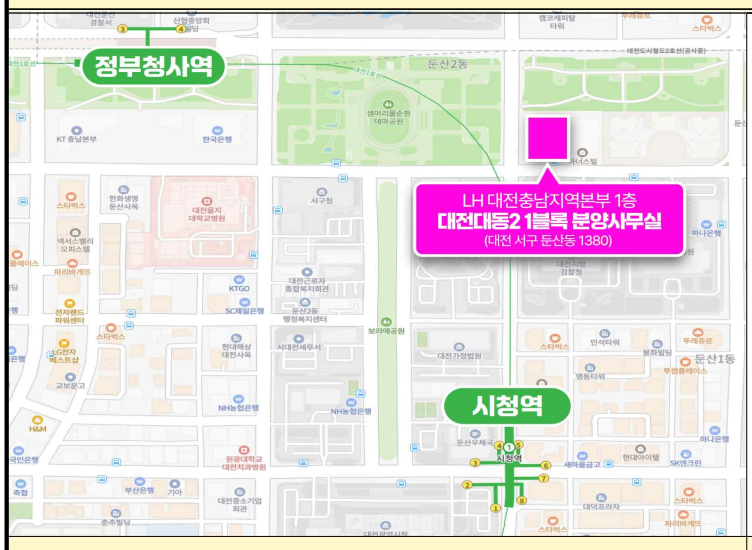
품목		59A/59B/59C	59D	84A/84B/84C	84D	비고
현관	현관도어록	디지털형	디지털형	디지털형	디지털형	
	세대현관문	분체도장급	분체도장급	분체도장급	분체도장급	
	바닥	포셀린타일급	포셀린타일급	포셀린타일급	포셀린타일급	
	마루귀틀	엔지니어스톤급	엔지니어스톤급	엔지니어스톤급	엔지니어스톤급	
	팬트리 벽지	실크도배지	-	실크도배지	실크도배지	
	팬트리 바닥	포셀린타일급		포셀린타일급	포셀린타일급	
	신발장	데코시트(PET)	데코시트(PET)	데코시트(PET)	데코시트(PET)	
거실, 주방	벽지/천장지	실크도배지	실크도배지	실크도배지	실크도배지	
	바닥	강화합판마루(기본형)	강화합판마루(기본형)	강화합판마루(기본형)	강화합판마루(기본형)	
	거실아트월	포셀린타일급	포셀린타일급	포셀린타일급	포셀린타일급	
	주방벽	도기질타일	도기질타일	도기질타일	도기질타일	* 옵션선택시 엔지니어스톤급 적용
	복도 팬트리 벽지	-	-	실크도배지	실크도배지	* 84D타입 계단 하부공간은 별도 선반 미설치
	복도 팬트리 바닥	-	-	강화합판마루(기본형)	강화합판마루(기본형)	
	주방 가구 문짝	데코시트(PET)	데코시트(PET)	데코시트(PET)	데코시트(PET)	
	주방 가구 상판	인조대리석(MMA)	인조대리석(MMA)	인조대리석(MMA)	인조대리석(MMA)	* 옵션선택시 엔지니어스톤급 적용
	아일랜드식탁	인조대리석(MMA) *59B타입 아일랜드식탁 없음	인조대리석(MMA)	인조대리석(MMA) *84C타입 아일랜드식탁 없음	-	* 옵션선택시 엔지니어스톤급 적용 * 59B,84C타입은 아일랜드식탁 없음
침실1 (드레스룸)	바닥	강화합판마루(기본형)	강화합판마루(기본형)	강화합판마루(기본형)	강화합판마루(기본형)	
	벽지/천장지	실크도배지	실크도배지	실크도배지	실크도배지	
침실2, 침실3	바닥	강화합판마루(기본형)	강화합판마루(기본형)	강화합판마루(기본형)	강화합판마루(기본형)	
	벽지/천장지	실크도배지	실크도배지	실크도배지	실크도배지	
	침실 문틀/문짝	데코시트(PVC)	데코시트(PVC)	데코시트(PVC)	데코시트(PVC)	
	붙박이장	-	-	-	-	*옵션선택시 설치
알파룸	바닥	-	-	-	강화합판마루(기본형)	
	벽지/천장지	-	-	-	실크도배지	
	침실 문틀/문짝	-	-	-	데코시트(PVC)	
욕실	벽	도기질타일	도기질타일	도기질타일	도기질타일	
	바닥	자기질타일	자기질타일	자기질타일	자기질타일	
	천장	ABS판넬	ABS판넬	ABS판넬	ABS판넬	
주방 설비	레인지후드	침니형	침니형	침니형	침니형	
	가스쿡탑	3구	3구	3구	3구	* 옵션선택시 인덕션 적용
	음식물탈수기	설치	설치	설치	설치	
	싱크수전	터치형수전(일반형)	터치형수전(일반형)	터치형수전(일반형)	터치형수전(일반형)	* 옵션선택시 터치형수전(거위목) 적용
욕실 설비	욕조(욕실1)	아크릴	아크릴	아크릴	아크릴	
	욕조수전(욕실1)	선반형 샤워욕조수전	선반형 샤워욕조수전	선반형 샤워욕조수전	선반형 샤워욕조수전	
	샤워수전(샤워부스)	수납일체형수전 (안마 및 레인형헤드)	수납일체형수전 (안마 및 레인형헤드)	수납일체형수전 (안마 및 레인형헤드)	수납일체형수전 (안마 및 레인형헤드)	
	양변기	비데일체형(욕실2) 준원피스(욕실1)	비데일체형(욕실2) 준원피스(욕실1)	비데일체형(욕실2) 준원피스(욕실1)	비데일체형(욕실2) 준원피스(욕실1)	
	세면기	설치(하부장일체형)	설치(하부장일체형)	설치(하부장일체형)	설치(하부장일체형)	
	비데	설치(욕실1)	설치(욕실1)	설치(욕실1)	설치(욕실1)	
	기타설비	스마트폰거치대 겸 휴지걸이	스마트폰거치대 겸 휴지걸이	스마트폰거치대 겸 휴지걸이	스마트폰거치대 겸 휴지걸이	
	비상콜	설치(욕실2)	설치(욕실2)	설치(욕실2)	설치(욕실2)	
에어컨 냉매매립배관		거실, 침실1	거실, 침실1	거실, 침실1	거실, 침실1	*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시 미설치
실별온도조절기		설치	설치	설치	설치	
세대환기시스템		설치	설치	설치	설치	
조명 설비	식탁등	LED	LED	LED	LED	
	실별조명등	LED	LED	LED	LED	
배선 기구	스마트생활정보기 (현관일괄 소등스위치)	설치	설치	설치	설치	
	대기전력자동 차단스위치	설치	설치	설치	설치	
정보통신 설비	월패드	설치	설치	설치	설치	

8.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감리금액:19,868,830천원)
1	한국토지주택공사 (131-82-13727)	금호건설㈜ (104-81-31309) 디엘이앤씨㈜ (676-87-01904) 계룡건설산업㈜ (314-81-07954)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306-81-09266) 다인씨엠건축사사무소㈜ (132-81-12608) 유탑엔지니어링㈜ (409-81-14831)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24-81-52860)

9. 분양사무실 및 홈페이지 안내

대전대동2 1블록 분양사무실



■ **위치안내**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 대전충남지역본부 1층
※ 분양사무실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길 :** (지하철) 시청역 5번 출구에서 약 500m
(지하철) 정부청사역 1번 출구에서 약 600m

■ **운영기간** : '25.09.05 ~ '25.12.31

■ **운영시간** : 평일 09:30~17: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10/18(토), 10/19(일), 10/25(토), 10/26(일)은 주말에도 운영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사이버견본주택)	분양문의
■ **주 소** : www.lh-dd.co.kr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대전대동2 1블록 상담사무실 : 042-477-7555** (09:30 ~ 17:00)

LH 대 전 충 남 지 역 본 부